

대구대학교 교원신규채용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임용규정 제3장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교원 신규공개채용(이하“신규채용”이라한다)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수 교원 채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교원”이라 함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제3조(충원대상결정 및 공고) ①신규교원 충원대상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충원이 필요한 학부(과)는 학부(과)교수회의(충원 예정 학년도 편제기준)를 거쳐 초빙분야를 명시하여 교원충원요구서를 제출한다.
2. 신설학부(과)는 신설학부(과)준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초빙분야를 명시하여 교원충원요구서를 제출한다.
3. 초빙분야는 지나친 세분화 또는 포괄화를 지양하며, 전공특성상 실무.실기 또는 실험실습 지도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이를 별도로 명시한다.
4. 충원대상 학부(과)와 채용인원은 교원충원요구서에 기초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5. 총장은 교원충원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이외에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부(과)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대상 학부(과)와 인원을 정할 수 있다.
6.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17조의 ‘특수분야’ 및 ‘특정분야’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원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서접수)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한 이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 (본교 홈페이지)으로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1. 교수초빙지원서(별지서식 1)
2. 연구실적목록(별지서식 2):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예정은 제외)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A4 1매 분량
4. 최종학위논문 요약본(별지서식 4): A4 1매 분량
5. 대표실적 요약본(별지서식 5): A4 각 1매 분량

제5조(심사절차)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심사(1차)(지원자격심사(2차)와 통합할 수 있음) <개정 2024. 9. 11.>
2. 서류심사
3. 지원자격심사(2차)
4. 기초심사(전공심사와 통합할 수 있음)
5. 전공심사
6. 공개강의심사

7. 학부(과)면접심사
8. 본부면접심사
9.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제6조(지원자격심사(1차)) ①지원자격심사(1차)에서는 지원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자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미공개

③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可”로 한다. 이 때 심사결과 보고서는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별지서식 6)에 의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자격을 갖춘 자
2.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특수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교육 및 연구(현장실무경력 포함) 환산경력 (별표 1)의 합이 5년 이상인 자
4. 특정분야는 학사학위 취득 후 접수마감일 기준 교육 및 연구(현장실무경력 포함) 환산경력 (별표 1)의 합이 5년 이상인 자
5.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별표 2]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에 따라 소정기간의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 자(단, 특정 분야는 예외)
7. 동일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지원자격심사(1차)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부합되는 경우 3인 미만인 분야도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분야 채용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국고사업 대비, 평가인증 또는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

⑤지원서 입력착오, 허위입력 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⑥지원자격심사(1차)와 지원자격심사(2차)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1.>

제7조(서류심사) ①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연구실적의 양 및 질적수준을 심사한다.

②미공개

③서류심사 통과자는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④지원자수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인 분야는 서류심사를 생략한다.

⑤서류심사 통과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효율적인 심사절차 진행을 위하여 지원서 접수기간에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9. 11.>

⑥서류심사는「교원신규채용 서류심사표」(별지서식 7)에 의한다.

제8조(실적물접수) ①서류심사 통과자는 소정기한 이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단, 우편물은 기한이내 도착분에 한한다.

1. 학위논문 : 석.박사 학위논문 각 1권
2. 대표실적 각 1부
3. 연구실적물 : 초빙분야와 관련된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 학술저서, 예.체능계

실기실적, 연구비수탁실적 각 1부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3x4 cm 1매
5.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각 1부
8.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1부
9. 전공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③대표실적은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 학술저서, 예.체능계 실기실적 중 2편을 지원자가 지정하되, 전체 연구실적물이 1편일 경우는 1편만 대표실적으로 지정한다(대표실적은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가능함).

④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별표 2]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에 의하되, 국제.국내저명학술지의 인정범위는 학술논문의 발표년월일과 관계없이 현재(교수초빙 접수시작일)의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⑤온라인 게재(e-publish)된 학술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서 접수기간에 실적물을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1.>

제9조(제출서류 검토) ①지원서에 입력된 각종 자료와 제출된 연구실적물 및 각종 증명서류를 비교.검토한다.

②미공개

제10조(지원자격심사(2차)) ①지원자격심사(2차)에서는 지원자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미공개

③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지원자격심사(2차)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부합되는 경우 3인 미만인 분야도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분야 채용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국고사업 대비, 평가인증 또는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

⑤지원서 입력착오, 허위입력 또는 실적물 미제출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1조(기초심사) ①기초심사에서는 지원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전공과 초빙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미공개
2. 지원자의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기초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2. 연구실적 :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및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④기초심사는「교원신규채용 기초심사표」(별지서식 8)에 의한다.

⑤심사위원의 1/2 이상이 전공일치 또는 부분일치로 판정한 경우 전공일치로 한다.

⑥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전공심사) ①전공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전공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적의 양 : 석.박사학위논문(최근 3년 이내의 논문만 인정), 대표실적, 학술논문(국제. 국내저명학술지) 및 학술저서, 예.체능계 실기실적의 양([별표 2]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
2. 연구실적 질적수준 : 최종학위논문과 대표실적의 초빙분야와의 전공일치도 및 학문적 우수성
3. 교육 및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포함) : 교육 및 연구경력, 현장실무경력의 우수성
4. 과제 수행경력 : 연구비수탁실적, 과제의 수행건수 및 중요도 등
5. 학위이수과정 : 학부, 석.박사과정의 초빙분야와의 일치성

④전공심사는「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별지서식 9)에 의한다.

⑤심사위원은「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에 심사결과를 기록한 후 주관부서에 인비로 제출한다.

제13조(면접대상자 선정) ①면접대상자 선정은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다만, 제 17조의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공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우선한다.

②면접대상자는 초빙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

제14조(공개강의심사)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개강의심사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미공개
2. 지원자의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공개강의계획서는 학부(과)회의를 거쳐 지정기간에 교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개강의계획서는 공개강의일 1주전까지 대상자에게 시간, 장소, 지원가능장비, 제출(지참)물, 강의 및 응답시간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개강의심사 시 타 학부(과)교수 및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⑥공개강의 미실시 학부(과)는 사전에 미실시 사유서를 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개강의심사는「공개강의심사조서」(별지서식 10)에 의한다.

제15조(학부(과)면접심사) ①학부(과)면접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미공개
2. 미공개

②학부(과)면접심사는「학부(과)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11)에 의한다.

③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신규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면접심사 당일까지 외국에서 미 귀국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우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일정기간 동안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본부면접심사) ①미공개

②본부면접심사는「본부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12)에 의한다.

제17조(재심위원회) ①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학부(과) 면접심사 및 공개강의심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시 총장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미공개

③재심위원회는 초빙 학부(과)장,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제청예정자 결정) ①총장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학부(과)면접심사, 본부 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배수의 범위내에서 제청예정자를 선정한다. 심사별 반영비율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40%, 공개강의심사 15%, 학부(과)면접심사 15%, 본부면접심사 30%를 원칙으로 한다.

②교원임용규정 제17조(교원의 자격)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직전대학의 직급을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1. 4년제 대학의 직급을 인정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급은 1개아래 직급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 포함)에 의해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임용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9조(동일교 제한) 제19조(동일교 제한) ①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20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심사위원 배제)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규채용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2. 지원자와 논문 및 저서의 공저자

3. 지원자와 같은 직장에 같은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자

제21조(심사결과 공개) 교원채용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한 자가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또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의3제6항)

제22조(미충원에 대한 제재) ①교원 초빙공고 후 3회 이상 초빙보류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학부(과) 교수의 의견이 상충되어 초빙보류를 요청한 학부(과)는 해당 학부(과) 교수를 배제하고 교원 초빙을 진행할 수 있다.

②교원충원 대상 학부(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충원요청을 하지 않은 학부(과)는 해당 학부(과) 교수를 배제하고 교원 초빙을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보칙) ①교원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 력 환 산 표

1. 교육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류	8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대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강의전담교수
제3류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의조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제4류	50%	고등학교 이하의 교사 경력	
	5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
	50%	공인된 체육단체 및 대학의 경기 지도자	

2.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석·박사 학위과정(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70% 비연구기관 70%
	100%	판사, 검사 경력 및 변호사로 개업한 기간	
제2류	80%	전공과 관련된 1개 이외의 동일 학위에 대한 경력(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류	70%	제1류 외의 실무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50%
	70%	박사학위 수료자(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연구조교(연구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유급·전임 조교(연구원)
제4류	50%	제1~3류 외의 근무 경력	행정조교 무급·전임조교(연구원) 자체조교(기관장발령)

[별표 2]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

1. 연구실적물 양적평가

가. 적용 : 서류심사(배점 30점), 전공심사(배점 25점)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 학위논문,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 학술저서, 예·체능계 실기실적

다. 연구실적물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물만 인정

라. 일반연구실적

1) 공동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책임자 : $\text{평점} \times 2 / (n+1)$, 공동연구자 : $\text{평점} \times 1 / (n+1)$ 로 한다.[단, 학술저서(단행본)는 $\text{평점} \times 1 / n$ 로

함]

① 책임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함 ② n = 연구자 수(논문은 공동연구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 저서는 총저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 로 함)

2) 국제저명학술지 중 Impact Factor(IF)가 10이상인 학술지는 인정환산율에 따른 평점 $\times(1+IF/50)$ 로 한다.

마. 예.체능계 연구실적

1) 교내에서 발표한 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개인전 최소기준 : 작품 10점 이상으로 신작 2/3이상의 기준

3) 2인전 최소기준 : 작품 7점 이상으로 신작 2/3이상의 기준

4)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책임자 : $\text{평점} \times 2 / (n+1)$, 공동연구자: $\text{평점} \times 1 / (n+1)$ 로 한다.[단, 연구자의 구성분포가 교내인 경우 책임자는 1인만 인정]

바. 전공심사에서는 인정점수(실적물간 중복되거나 초빙분야와 관련 없는 실적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사. 연구실적물 평가항목, 평점 및 인정범위

1)일반연구실적

구 분	평 가 항 목		평 점	인 정 범 위	비고
학술논문	국제저명학술지	SSCI	300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A&HCI	300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SCIE	250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	
		SCOPUS	200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다만, Document type이 Article-in 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제외)	
	국내저명학술지	A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B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학술저서 (단행본)	전문학술저서	200~300	[국제A] 300점 외국어로 간행된 전문 학술저서로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우수출판상 또는 학술상 등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국제B] 250점 외국어로 간행된 전문 학술저서로 전공분야의 학술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학술저서 [국내A] 250점 국문으로 간행된 전문학술저서로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우수출판상 및 학술상 등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우수도서로 선정된 저서 [국내B] 200점 국문으로 간행된 전문학술저서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학술저서 ※전문학술저서 : ISBN이 부여된 것에 한하며, 그 분량은 200쪽 이상(200자원고지 800메이상)		
	전문분야대학교재	150	전문대학이상 강의용 교재로 그 분량은 1학기이상의 강의가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200			
	석사학위논문	100			
외부 연구비 수탁	500백만원 이상		0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외부수탁연구비	전공심사에 서 반영
학술논문	국내·외 일반학술지		0	국내 및 국제 저명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	
학술발표	국내(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및 초록		0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및 초록, 국제학술대회(발표자 분포가 외국3개국 이상)에서 발표한 논문 및 초록	
특허 및 지적 소유권	국내(국제)특허의 등록 및 출원		0	국내특허의 등록 및 출원, 국제특허의 등록 및 출원	
학술관련 상훈실적			0	국제학회 및 단체수상, 국내학회 및 공공단체 수상, 국가훈장, 국가포상	

2) 예·체능계 연구실적

구 분	평 가 항 목	평 점	비 고
조 형 예 술	국제전 특선 이상	150	
	국제전 입선	100	
	미술대전(국전), 전국규모 공모전 특선 이상	70	
	미술대전(국전), 전국규모 공모전 입선	50	
	국내·외 개인전	150	
	국내·외 2인전	100	
	추천작가 이상으로 공인된 단체전 출품	40	
	공인된 국내·외 추천작가 이상 단체전 및 초대전 출품	50	전국규모전문학술지발간 학회에서 개최하는 공인전시회 또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발간 학회에 상응하는 전공분야별 협회에서 개최하는 공인전시회와 주관기관이 법인등록으로 등록된 경우 인정
	공인된 단체전 출품	30	상동
체 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100	2인 공동발표회 : 70% 3인 공동발표회 : 50% 4인 이상 공동발표회 : 30%
	올림픽경기 감독 또는 코치	100	
	종목별 아시아 선수권대회 이상 경기 감독 또는 코치	70	
	공인된 국제경기대회 입상	70	
	국내 전국규모 대회 입상	50	
	국제 공인심판자격 취득(자격 취득시 1회)	100	
	국내 공인심판자격 취득(자격 취득시 1회)	30	
	국제 공인대회 심판(대회당)	100	
	국내 공인대회 심판(대회당)	20	
	각종 지도상 · 대통령상 · 전국규모 지도상 · 도단위 지도상, 전국규모 연맹지도상	100 70 50	

2.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표: 미공개